

- 2026년 산학융합 혁신기반 활용사업 -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(사)울산산학융합원에서는 지역 내 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「산학융합 혁신기반 활용사업(시제품 제작 지원)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6월 26일
(사)울산산학융합원장

1 사업개요

- 사업목적** :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
- 지원규모** : 5개사 내외(기업당 10백만원 이내)
 - 부가가치세 제외, 지원금의 10% 이상 기업체 현금 매칭 必
- 지원대상** : 울산지역에 본사 또는 연구소 등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
- 지원기간** : 협약 체결일 ~ 2026. 11. 30.
- 지원내용** : 기업 수요 기반 시제품 제작(목업, 금형 제작, 기구 설계·가공, PCB 설계·제작, 제품개발 등) 비용 지원

지원분야	세부내용
목업	■ 실물과 동일 또는 축소 크기의 시제품 모형 제작을 통해 형태·구조·기능 확인
금형 제작	■ 사출프레스·다이캐스팅 등 양산 전환을 고려한 금형 설계 및 시작 금형 제작 지원
기구 설계·가공	■ 제품 구조 설계 및 CNC·레이저·3D프린팅 등을 활용한 기구물 가공 지원
PCB 설계·제작	■ 회로 설계를 기반으로 절연기판 표면·내부에 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기판 제작 지원
제품개발	■ 상기 지원분야 외에 기업 수요에 따른 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 제품 고도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

2 추진절차 및 평가기준

□ 추진절차

☞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사업운영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사업공고 융합원 26. 6. 26. ~ 7. 17.	⇒	사업신청서 접수 기업→융합원 ~ 7. 17.	⇒	선정평가 평가위원회 7. 20.(예정)	⇒	선정결과 통보 융합원 7. 21.	⇒	협약체결 기업↔융합원 7월 중
↓								
지원금 지급 융합원→기업 12월 중	⇐	지원금 지급 검토 융합원 12. 7. ~ 12. 11.	⇐	결과보고 기업→융합원 12. 7.	⇐	중간점검 융합원→기업 9월 중	⇐	과제수행 기업 협약일 ~ 11. 30.

□ 평가 및 선정기준

- (평가단계) 요건검토 → 선정평가(대면평가) → 결과통보
- (평가방법)
 - 요건검토 :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서면검토
 - 선정평가 :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신청기업 책임자 발표평가 실시
- (선정기준) 심사기준에 따른 종합평점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
- (평가항목)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

구 분	평가항목	배 점	
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성	■ 추진목적·배경 및 지원 필요성	10	20
	■ 지원사업 목적과의 적합성	10	
기업·제품 역량	■ 제품의 기술성 및 차별성	10	20
	■ 기업 보유역량 및 수행능력	10	
사업계획의 적정성	■ 제작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20	40
	■ 사업비 집행계획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	20	
기대효과	■ 매출·고용 등 성과창출 가능성	10	20
	■ 산업적·경제적 파급효과	10	
합 계		100	

3

신청방법 및 문의처

- (신청기간) 공고일 ~ 7. 17.(금), 18:00까지
- (신청방법) 등기우편 및 온라인(e-mail) 접수
- (접수 및 문의처)
 - 담당자 : 김도윤 대리(☎ 052-240-8813, doyun900@ulsan-uic.kr)
 - 주 소 : (44776)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4, 기업연구관 504호
- (제출서류)

제출서류 목록		제출부수
①	[서식 1] 사업신청서	1부
②	[서식 2] 사업계획서	1부
③	[서식 3]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1부
④	[서식 4] 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 서약서	1부
⑤	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	1부
⑥	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(국세청 발급)	1부
⑦	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(정부 24 발급)	각 1부
⑧	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(해당 시)	1부
⑨	견적서(산출근거 증빙)	각 1부

□ 선정 및 지원제한

- 신청내용 또는 제출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,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동일·유사 과제의 중복지원, 휴·폐업, 국세·지방세 체납,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신청서류 및 평가

-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 미비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- 보완요청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
-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·지원금액 및 지원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, 평가 절차 및 세부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

□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

- 선정기업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, 사업내용·사업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선정기업은 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정산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
□ 지원금 지급 및 정산

- 지원금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선집행 후, 정산서류 검토를 통해 적정성이 확인된 건에 한하여 후지급하며, 서류 미비 또는 부적정 집행 확인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(협약체결일 이전 집행액은 불인정)
-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급하며, 부가가치세 및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기업이 부담함

□ 사후관리

-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후 정산·사후관리·성과조사 등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